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62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민홍철·백혜련·문진석

한정애 · 정준호 · 허성무

한준호 · 신정훈 · 황 희

김교흥 • 위성곤 • 차지호

장철민 • 박홍근 • 전재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

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837條의2(面接交渉權) ① ~ ③	第837條의2(面接交涉權)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가정법원은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면접교섭을 허가 또
	는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
	부・모・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
	여 결정하여야 한다.